신안산대학교	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	규 정 번 호	3-1-13
		제 정 일 자	2021. 11. 16.
		개 정 일 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대외협력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현장실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현장실습에 대한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
3. 산·학 현장실습 수행 모델 설정
4. 산·학 현장실습 관련 정책수립 및 자문
5. 현장실습 실시에 따른 사전교육, 방문지도 및 현장실습지원시스템 관리
6. 산학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, 결과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
7. 그 밖에 현장실습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3조(구성) 다음의 직제와 기구로 구성한다.

1. 현장실습지원센터장
2. 현장실습 행정지원
3. 운영위원회

제4조(위원회) ① 현장실습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맡는다.

③ 위원회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현장실습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2.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
3.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.

③ 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재정운영 및 기타

제6조(재정) 재정은 신안산대학교 교비회계, 산학협력단회계, 정부 및 기관단체 지원금, 기타 수익

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